

글로벌 경제시대의 공정경쟁 촉진제도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가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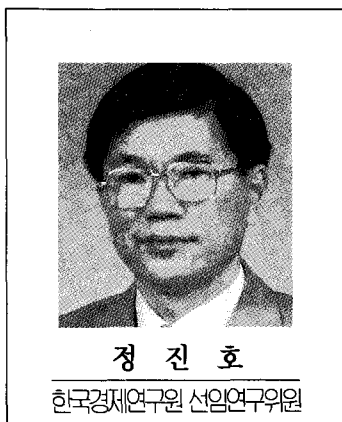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를 향한 정치·경제·사회의 대변혁은 지금까지 우리가 매달려 온 국가 경제 개념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전체를 활동 무대로 생각하는 글로벌경제의 틀과 질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올림피아드 게임처럼 생각하여 한국의 국민총생산과 무역 규모, 한국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한국 국민의 생산성과 취업률을 키우고, 높이고, 낮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의 지원과 개입도, 기업의 결합과 거래도, 국민의 저항과 옹호도 용납되던 시대는 이미 마감하기 시작했다.

민족과 국가를 내세워 인권을 제한하고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것도 국제 사회에서 마찰의 원인이 되고 국제 규범에 의해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활동에 관한 한 국적에 따른 차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란 국가 경제 시대의 국가간의 경쟁력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가가 가진 경쟁력을 의미한다. 즉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능력있는 사람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이들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얼마나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국민·기업·정부 모



정 진 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가 가치 있는 활동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능력에 관한 상대적 평가가 바로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

국가간의 상품과 용역의 교역, 자본 이동, 기술 이전, 정보 접속과 활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으며, 수송·통신·거래 비

용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집중된 단일 시장에서의 금융거래 정보가 전 지구적으로 가격 선도를 하고 있으며 무역장벽 또한 국제협약과 쌍무적 압력에 의해 낮아지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광물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고급·과학 인력의 공급 또한 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인구의 나라들이 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공산품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메리트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무엇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시대의 도래를 MIT대학의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 교수는 자본주의의 지각구조(plate tectonics)가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의 강자가 소멸하고 점진적 진화가 급격한 변화로 증폭되는 돌변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 바로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싸우며 국민을 보호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일이 아니

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도 국제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더 높은 소득 기회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옮겨 가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능력을 더 낮게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규제가 덜 심하고 투자의 자유가 보장되고 세금이 적은 지역에서 전세계를 겨냥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금리가 높고 비용을 견디기 어렵고 성공을 존경받지 못하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거나 떠나기를 원한다.

정부의 간섭과 관료의 지배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 보다는 사업의 꿈을 이루고 일의 성과에 따라 존경받을 환경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키우고 보호해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어느 경쟁력 있는 기업인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또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는다. 기득권자가 되어 버린 기업과 관료가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 글로벌 경제시대에도 주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과 산업을 선별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전지구적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민주적 선거가 정치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비전을 선택하듯이 자유로운 기업가가 원하는 기업 경영여건을 제공하는 국가의 특정지역을 선호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고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압력으로 체질을 강화시켜, 시장원리와 경제 원칙이 국가경영의 기초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즉 국가간의 경영 능력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경쟁 정책의 대두

지난 47년 동안 유지되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미·소 양국의 체제 대결 환경 하에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주의식 공업발전을 확산시키면서 자유무역과 자본시장 집중화를 꾀해 왔다.

유럽의 재건과 경제 부흥이 완료되고 동아시아의 제조업 생산기지화가 고속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 경제 질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누적과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다극화 자본주의 체제 대결로 치닫고 있

다. 이러한 와중에서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다자간 협상이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WTO(국제 무역 기구)가 출범되었다.

WTO체제는 자유무역의 범위를 제조업 공산품에서 농산물, 용역서비스, 지적 재산권으로 확대하고 공정교역의 원칙을 비판세 장벽의 제거, 지구적 차원의 환경규범 준수, 심지어는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되는 불법 노동의 근절에까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ATT체제가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 협약」이었다면 WTO체제는 「국제교역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료화하는 국제의결 기구」이다. 따라서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국제규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무역정책 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ureau)는 국제규범의 국내법예의 수용 여부를 판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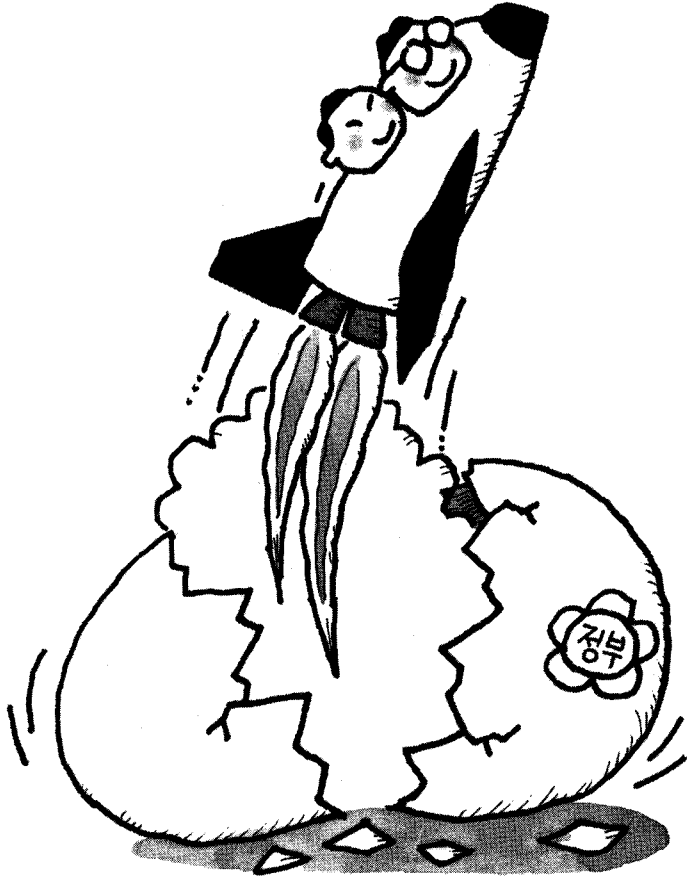
또한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실효성있게 다루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ureau)는 신속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일방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교차보복을 인정하여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경쟁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Davos회의에서 EC집

행위원회 Leon Brittan 부위원장이 제안하였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주창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내세운 「평준화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으로 집약되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은 이제 WTO체제의 틀 안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의 하나로 만들기위한 새로운 「경쟁라운드」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도 이제는 「국가고유의 국내정책」이라는 폐쇄적이고 편협된 국수주의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의 수용과 조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개방된 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료화하는 「글로벌경제의 공정경쟁 촉진정책」이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영혁신가적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 노력은 다자간 협상, 권역간 협상, 쌍무적 협상을 통해 오랫동안 다양하게 진전되어 왔다. 아직은 통일된 국제규범이 정착되지 않은 이 시점이 바로 한국경제가 WTO출범과 OECD 가입 신청을 계기로 고속성장 중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정한 글로벌경제 경쟁규칙의 수립을 주창해야 할 시점이다.



불공정거래 치유에 치우친 공정거래 제도

경쟁정책은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공정거래」를 강화하여 자유경쟁 시장체제 적응에 성공한 경제주체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표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쟁정책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정지표의 달성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정책은 「경쟁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를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시장 영향력이 큰 경제주체의 불공

정 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남용이 가능한 경제조직의 형성자체를 방지한다」는 의도로 정부의 시장질서 개입을 직접적인 「기업구조 선택의 자유」의 제약으로까지 확대해 온 실정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과 전략적 유망산업에서의 기업규모 대형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나 독과점화된 시장구조의 개선을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다루려고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집단과의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대기업집단이 소수 기업주와 특수 관계인들에 의해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정부 주도 성장과정에서 공기업 비중이 높고 관료에 의한 시장지배가 심화된 경제전반의 현상처럼 기능과 규모는 다양화되고 커지면서 지배구조는 분권화 분사화(分社化)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이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듯이 경쟁 심화와 기술 확산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급격히 바꿀 것이다. 출자총액 제한 한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더라도 기업지배권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의 활용이 어려워 비효율적인 그룹내 기업의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진입과 퇴출의 장벽이 낮아지면 어렵게 따낸 인허가권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쟁우위가 없는 기업을 기업집단 내에 묶어둘 인센티브도 없어진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대기업집단도 획득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대형화와 기업집단의 슬림화는 선진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경쟁력있고 발빠른 중소기업이나 단독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압력을 증대시키면 시장의 힘에 의해 정부의 인위적 개입없이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면서도 독과점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정부가 시장개방을 기피하고 진입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한경쟁시대의 경쟁주체는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보호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보호된 시장의 가격이 높아 소비자가 부담을 지거나 기업의 부채

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보다는 정부가 허가하는 제품이 공급되는 것은 폐쇄된 시장 내에서 관료의 지배력을 높이고 보호된 시장 내에서 기업이 경쟁을 기피하고 안주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를 볼모로 결탁하는 사례는 정부가 민간을 지배해야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관료지배 중앙통치 시대애나 있었던 일들이다.

공정거래 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공정경쟁 촉진

공정거래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활력을 심고 자본주의 체제의 노후화를 방지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강한 기업과 능력있는 사람이 경제적 성과를 누리기 때문에, 기업은 강해지려 하고 사람은 능력을 키우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열정과 경제적 욕구를 견지시켜야 할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제도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해야 한다.

80년대 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 우리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경제는 정부가 민간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비능률

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제 운용 방식을 민간주도로 바꾸는 데는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행동규범을 정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의 기반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거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지 15년이 지났고, 그간 네 차례의 법개정이 있었고, 하도급법과 약관법도 제정되었고, 최근 정부조직 축소 개편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지위가 격상되고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기반의 개선과는 달리 공정거래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기득권자들의 이익 각축장으로 백안시되고, 시장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경제관료에게는 「재벌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보여지고, 경쟁력없는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창업기업의 진입을 막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의 대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로 오해되어 지며, 미국과의 경제협력대화(DEC)에서는 미국 경쟁정책의 역외적용을 위한 대화 창구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위가 격상된 만큼 공정거래 제도의 정책수단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효성있는 정책행동을 통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쟁정책과의 조화나 수렴을 위해서는



이에 앞서 국내에서의 공정거래 제도 집행이 「경쟁촉진」과 「공정거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야 한다.

정책의 명료성, 절차의 투명성, 판단 근거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새로이 전개될 경쟁라운드 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의 독과점 금지법의 운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기구(NAFTA)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의 경쟁정책이 조화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창되고 있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보완성 제고 방안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이 없이 미국·일본·EU 등과 쌍무적 대화에 임하게 되면 그들의 경쟁정책을 준비없이 수용하

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비협조적인 또는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수 있는 대화상대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

공정거래 제도의 핵심은 시장 체제에서의 효율적인 행동규범을 「공정경쟁의 촉진」(free and fair competition)에 두는 데 있다. 「자유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자유기업 제도를 확립하고 인간의 창조적 정신을 기업의 혁신 능력으로 승화시키고, 어떻게 「작지만 강하고 유연한 정부」를 재창조하여 국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신속하게 차별없이 공급하느냐가 국가 경영의 핵심을 이룬다.

9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정부의 통제보다는 민간기업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수송체계의 보편화와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의 급신장은 세계의 지리적·경제적 거리를 현격하게 단축시켜 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 지구를 활동영역으로 하는 기업활동의 확산은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여 산업 구조의 재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일부로 부상시키고 있다. 경쟁적 시장의 힘이 자원 배분과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차별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선진각국은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해외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을 조화시키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반트러스트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법을 중심으로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소규모기업 보호 위주로 경쟁정책을 운용해왔으나 이것이 자유로운 경쟁자체를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는 경제효율의 제고가 반트러스트의 유일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시카고 학파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반트러스트 법의 국가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도 축소되어 법집행의 범위는 확대되고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는 강화되고 있다.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94년 10월 「국제 독점금지법 시행보조법」의 제정과 더불어 관할권의 영향이론(effects doctrine)

에 기초하여 미국의 국내교역이나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는 그 발생지나 관련 당사자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1947년 제정된 이래 개별거래에서의 경제적 약자 보호, 물가대책으로서의 가격카르텔 금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당표시 방지 등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더구나 일본은 독점법 적용제외를 빈번히 사용하여 수출입의 효율적 수행과 중소기업들의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불황산업의 합리화 수단으로 카르텔의 형성도 허용하여 경쟁촉진 보다는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수행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일본의 독점금지정책은 1989년 7월에 시작된 미·일 구조조정협약(SII)를 계기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일본기업의 배타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로 과징금 제도에 의존하여 법을 운용해 온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이 각국의 관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미국의 수출보호방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협력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은 로마조약 제85조에 의거하여

회원국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결정, 또는 협조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EU기업들이 생산합리화, 규모의 경제 실현, 신제품 개발, 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생산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시장 전략, 시장 개척, 공급의 안정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배타적인 판매나 구입 관련 합의는 로마조약 제85조 3항에 따른 적용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공정 경쟁 촉진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기준 원칙은 적용 예외(exemption)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에만 국한된 기업활동이나 기업조직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 참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유용성」의 조화이다.

WTO협정을 보면 경쟁정책이 통상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과거보다 철저히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차별적인 국내법규의 적용을 금지하며,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나 시장왜곡을 차단하는 반덤핑·상계관세의 규칙을 명료화하고 있다.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UR/TRIPs)도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나 남용에 의해 야기된 국제통상의 왜곡을 줄여 경쟁정책적 목표달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게 다음 다섯 가지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경쟁의 촉진」을 세계화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에 관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변화로 기회를 창출」하는 민간 활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한다.

둘째, 「기회의 개방」을 원칙으로 경쟁제한 제도를 철폐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강자를 억압(대기업 참여 제한)하기 보다는 약자의 불이익(담보대출관행)을 제거하고 강자의 경쟁기피(외국기업 진출차별)를 막아야 한다.

셋째, 「책임의 강화」를 통해 경쟁의 자유에 상응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물관련 안전책임, 환경영향 평가, 퇴출부담의 전가금지, 실패기업의 정부보호적용 등 경쟁규칙을 명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

적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쟁에 의한 성장」이 경제력집중 억제 문제와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를 창조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엄정한 집행에 의한 소유분산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 초일류 선진기업의 국내유치와 시장개방 확대가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원과 보호가 양적 성장을 촉진시켜 왔었으나 이제는 자율과 경쟁이 질적 성장의 원동력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규범의 국제화」는 국내경쟁법의 개선과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사업지 경쟁규칙 준수 의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통상이 확대되고 투자 진출이 개방되더라도 선점기업에 의한 독점화가 진행된다면 사회적 후생 증대와 경제적 이익 기회는 상쇄되어 버린다.

우르피라운드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 각국간의 경쟁정책 조정문제가 거론되었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각 나라의 특수한 정책목표 추구에 제약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라운드로 남게 되었다.

현지화된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바람직하나 국제규약 때문에 외국인 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한다. ■